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72 발의연월일: 2021. 1. 29.

발 의 자:윤재옥・박덕흠・정찬민

이명수・김은혜・권영세

정희용・유경준・구자근

추경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보험료율 한도를 0.5%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,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「예금자보호법」 부칙에서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시행시기를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, 이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의 「예금자보호법」에서 정한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보험료율한도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현재의 금융사정과 상황이 많이 다른 1998년도의 보험료율을 책정하게 하는 불합리와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.

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보험료율 책정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, 예금자보호제도에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(안 부칙).

법률 제 호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"2021년"을 "20 26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	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
일부개정법률 부칙	일부개정법률 부칙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(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	②(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
례)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	례)
관하여 <u>2021년</u> 8월 31일까지	<u>2026년</u>
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험	
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	
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	
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	
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	
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	
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	
을 적용한다.	